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초기관광벤처부문 모집 요강

관광 분야의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자의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제13회 관광벤처사업 공모전」에 참여할 초기창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2년 2월 4일

I

모집개요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한국관광공사

사업목적

- 관광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초기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여 한국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선정규모 : 총 70개 내외

지원대상

- 관광과 관련한 창의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초기창업자(창업 3년 이내)로 사업 공고일('22.2.4.) 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초기창업자 인정범위

- 가. 초기창업자 : 사업 개시일 부터 3년 이내 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3)
나. 창업일 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다. 복수 사업자 :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모두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내 해당자

① 창업일이 '19. 02. 04. ~ '22. 02. 04. 해당되는 창업기업(개인·법인)

② 폐업경험이 있으나 창업하여 초기창업자 인정범위에 충족하는 자

□ 모집유형

모집유형	개념	예시
체험콘텐츠형	관광객이 직접 참여하여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콘텐츠의 개발과 운영에 관련된 사업	캠핑, 한류, 미식, 무장애, 반려동물, 공연 등 특정 테마와 연계된 여행상품, 레저스포츠와 연계된 액티비티 여행상품, 지역 특화형 여행상품, AR/VR 활용 콘텐츠 제작 등
기술혁신형	혁신적 기술로 관광편의를 제공하며 IT 등 기술 자체가 수익모델인 사업	관광 플랫폼, VR/AR 기술개발, 챗봇 안내, 스마트 모빌리티, AI기반 여행 큐레이션 서비스, IoT 짐배송 등
시설기반형	시설 또는 물적 자원을 핵심기반으로 하는 관광사업	IT 기술 접목 테마공원, 사물인터넷 적용 호텔, 마을호텔 운영, 목장·농원 자원 활용 체험 상품 등
기타형	타 유형에 속하지 않은 창의적인 관광사업	

- ① 모집유형 중 창업 아이템 해당 유형을 선택하여 공모전 신청
- ② 융·복합 아이템일 경우 모집유형 중 주력부문 선택
- ③ 모집유형 구분 없이 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II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총 7개월 (협약 체결일로부터 ~ '22.11월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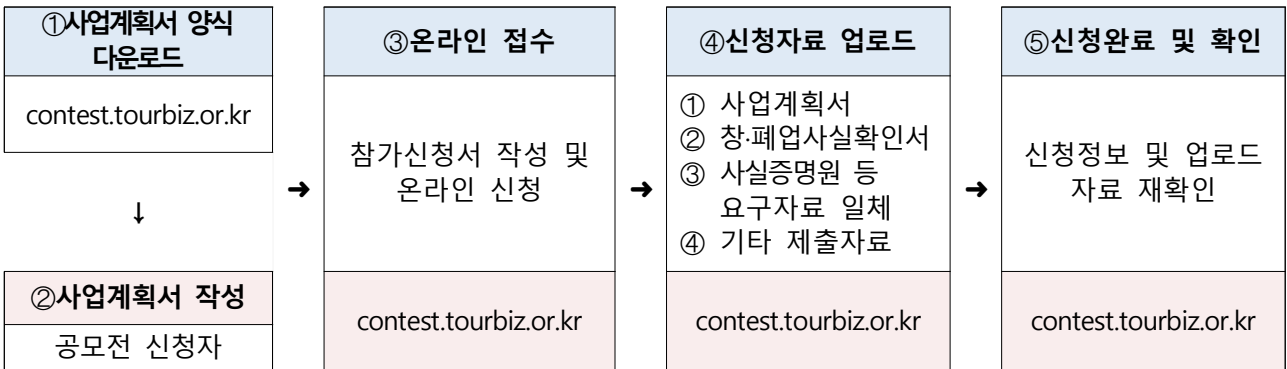
□ 지원내용 :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업화 지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구분	지원내용	비고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규모 : 평균 5,780만원 (최대 9,600만원~최소 4,800만원) *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사업화지원금은 협약기간 동안만 집행가능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사업비관리시스템 활용(바우처카드 지급) ▪ 자금용도 : 인건비, 재료비, 외주용역비, 광고선전비, 유·무형 자산취득비 등 	자부담(현물) 20% 포함 (총 사업비 기준) * 붙임 '사업화자금 사용기준' 참고
교육 및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 : 창업자 역량강화를 위한 분야별 교육 ▪ 컨설팅 :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홍보·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네트워크 및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트워크 : 창업자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투자유치 : 유관기관 투자유치 지원 	-
투자유치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선정 기업은 문체부에서 조성한 관광기업육성펀드의 투자대상에 포함 	실제 투자여부는 펀드운용사에서 판단
초기관광벤처기업 자격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관광벤처기업 자격 부여 ('25.12.31까지) 	기타 안내사항 참조

III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2년 2월 4일(금) ~ 3월 8일(화) 14:00시 까지
 - * 신청 마감일은 시스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 신청하는 것을 권장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사이트 : contest.tourbiz.or.kr)
 - * 참가신청 및 제출자료 우편, 방문접수 불가

< 공모 신청절차 >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참가신청서	공모전 신청 시 온라인 작성 및 제출	공모전 신청 웹 사이트 (contest.tourbiz.or.kr)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및 창·폐업 사실확인서 가점서류, 참고자료	온라인 제출(PDF 파일로만 제출) ※ 공사 제공양식 준수		
사실증명 (총사업자 등록내역)	공고일 이후 발급한 증명원을 스캔하여 PDF로 제출 ※ 유의사항 : 온라인 발급 시 3시간 내외 소요되어 접수마감 전 사전 준비요망	①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텍스 ② 오프라인 발급 : 관할 세무서	
가점 서류 (해당자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지역가점해당자)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별첨에 첨부	사업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
	주민등록 등본 (청년우대)	대표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별첨에 첨부	
	벤처기업 확인증 (벤처확인기업)	신청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증'을 스캔하여 사업계획서 별첨에 첨부	

※ 공모전 신청 및 서류제출 주의사항

- ① 사업계획서는 공모전 신청 사이트에서 제공된 양식만 허용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 ② 제출서류는 접수일 마감까지 공모전 신청 사이트에 업로드 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되며, 미 제출 시 평가대상 제외 및 가점 불인정
- ③ 각종 서류 제출 후 접수 및 서류 첨부 여부 반드시 확인, 미확인으로 접수 및 제출 서류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④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심사·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후에도 제출서류가 허위로 발각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⑤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 종료 후 파기
- ⑥ 제출서류는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22.2.4.~)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IV

평가 및 선정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절차** : 지원자격검토 → 1차 서류평가 → 2차 발표평가(1.8배수)
- **평가기준** : 사업의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화전략, 사업의 지속가능성, 리더십, 관광산업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우대사항** : 가점 항목 해당 시 최대 3점 부여

* 1차 서류평가에 한하여 적용되며, 항목별 증빙서류 미 제출 시 가점 불인정

< 가점항목 및 점수 >

가점항목	지원내용	점수	비고
지역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 해당되는 경우 * 단, 소재지 신고일자가 '22.02.04 공고일 전까지인 경우에 한함 * 복수사업자의 경우, 참가신청서에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해당 지역일 경우만 가점 인정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사(점) 소재지 기준 	1점	
청년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대상 :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로 주민등록등본 상 '82.02.05 이후 출생자 * 관련근거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4 	1점	최대 3점
벤처기업 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이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확인증'을 보유한 경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의거, 유효기간 내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1점	

□ 최종선정

- 평가기준에 따라 발표평가 점수 고득점 순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확정
- * 평가결과 및 사업비 활용계획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 공모전 평가 및 선정 프로세스 >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지원자격검토	공모전 신청자	▪ 제출서류, 초기창업자 지원자격 등에 대한 검토 진행
1차 서류평가	지원자격검토 합격자	▪ 평가방식 : 신청자 사업계획서 서류심사 ▪ 평가기준 :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화전략, 지속가능성, 리더십, 관광산업 연관성 등
1차 서류평가 합격후보자 추가증빙 제출	1차 서류평가 합격후보자	▪ 기 제출한 창·폐업사실증명서 상의 각 연번의 사업자별 세부증빙을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두 제출 * 복수의 사업자를 창·폐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각 사업자별 해당증빙을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계속사업자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추가제출 - (폐업사업자 경우) 폐업사실증명원 - (사업양도, 비영리조합 등) 사실증명(대표자등록내역), 고유번호증 등 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 증명서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 공동(각자)대표일 경우 각 대표별 세부증빙 모두 제출
1차 합격자 공지 및 추가서류 제출	1차평가 합격자	①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사본 *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으로 발급된 것만 인정 * 증명서 발급일이 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발급된 증명서만 인정 ② 창업·유지확약 동의서 ③ 중소기업확인서 ④ 공동대표의 경우 신청인 외 공동대표 사업참여 동의서 ⑤ 법인사업의 경우 주주명부 ⑥ 2차 발표평가 자료(지정양식)
2차 발표평가 (1.8배수)	1차평가 합격자 (서류제출자에 한함)	▪ 평가방식 : PT발표 및 질의응답 * 참가신청서 대표자만 허용, 팀원 1명 배석가능(참석자 신분증 지참) ▪ 평가기준 : 창의성, 시장 및 사업모델, 사업화전략, 지속가능성, 리더십, 관광산업 연관성 등
최종선정	2차평가 합격자	▪ 합격자 심의 후 최종 선정자 확정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및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취득/상실일 포함) 제출

V **신청자격 제한**

- 초기창업자 인정범위에 충족하지 않은 자
 -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관광분야 외 창업아이템으로 공모전에 신청하는 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상에서 규정한 창업제외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을 영위하는 자
- 공모전에 신청한 동일 아이템으로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등에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고 있거나, 선정되어 지원받을 예정인 자

○ 한국관광공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중복수혜 범위는 아래표 참고)

◆ 한국관광공사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중복수혜 범위

- **중복수혜 인정범위** : '19~'21년 공모전에 참가한 수혜자는 아래 중복수혜 인정 범위표 'O'에 해당될 경우에만 초기관광벤처 부문 신청가능

기존 참가 시 지원부문	기존 참가 시 자격	13회 초기관광벤처 부문 참가 가능여부	비고
9회(2019 상반기)~10회(2019 하반기) 선정 예비관광벤처, 10회(2019 하반기)~11회(2020년) 선정 재도전관광벤처	예비창업자 (사업자 미보유) 기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O X	 성장관광벤처 지원가능
11회(2020),12회(2021) 예비관광벤처	예비창업자 (사업자 미보유)	O	
11회(2020),12회(2021) 초기관광벤처	기 창업자 (창업 3년 이내)	X	성장관광벤처 지원가능

- 기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또는 기 출시된 제품·서비스 등을 도용하여 사업아이템으로 신청한 자
- 신청일 기준 휴업중인 기업
- 공모전 공고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한국관광공사 재직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예외조건]

- ① 공모전 접수 마감일('22.3.8.)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세금분납계획(체납처분유예신청)에 따라 성실 납부중인 자
- ※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관련자료 온라인 제출 필수

- 채무불이행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규제중인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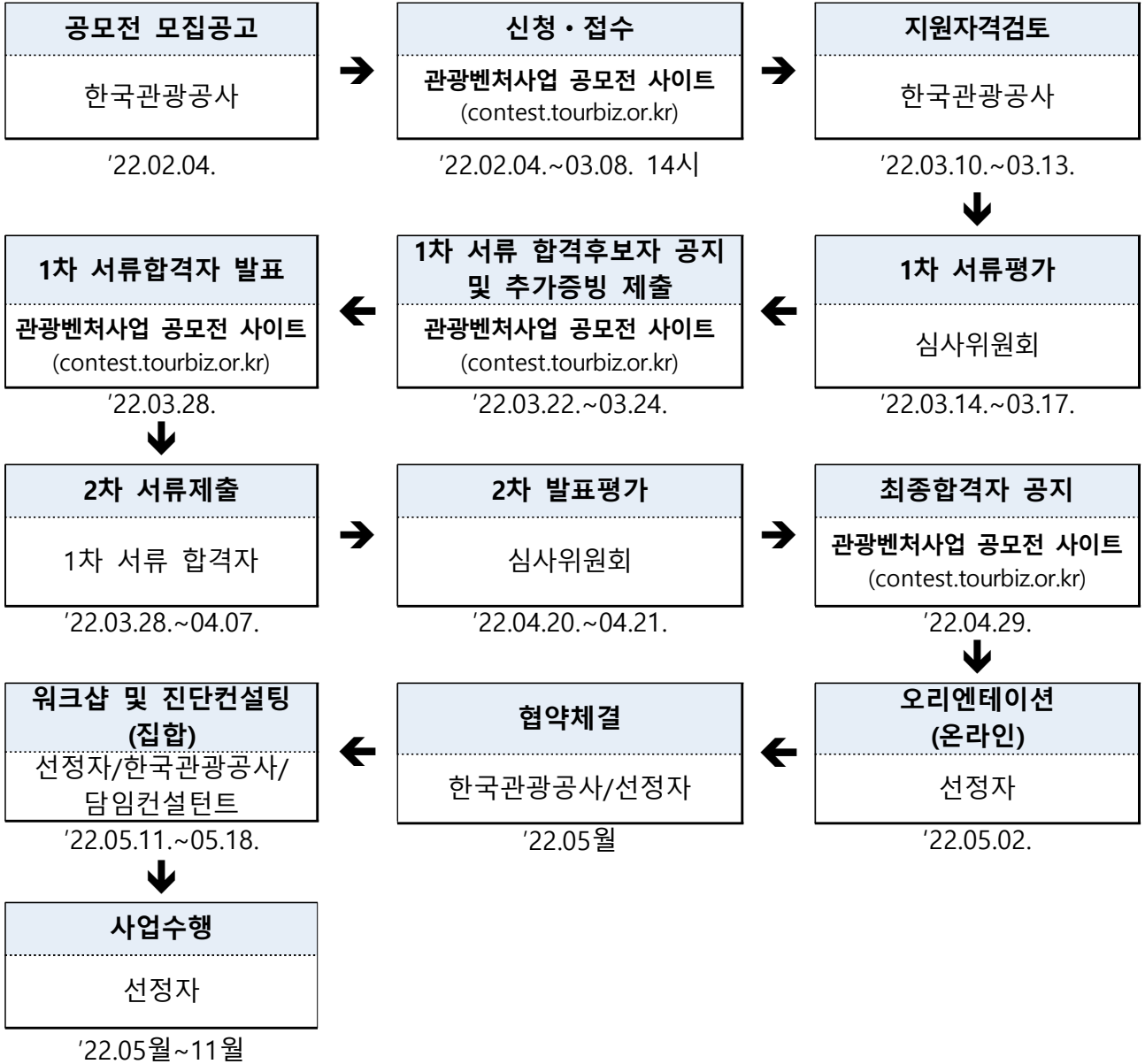
[예외조건]

- ① 공모전 접수 마감일('22.3.8.)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 ②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자
- ③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자
- ※ 예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관련자료 온라인 제출 필수

- 기타 주관기관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VI 추진일정 및 신청문의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신청문의

- 문의처 :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운영사무국
- 연락처 : 02-6953-1310
- 이메일 : tourbiz_contest@knto.or.kr

VII

유의사항 및 기타안내

□ 공모전 신청 시 유의사항

- ◆ 관광관련 창업아이템으로 직접 수익사업이 가능한 자만 참가 가능
- ◆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신청 시 관광관련 사업목적 수행할 사업자를 선택하여 신청 (추후 변경불가)
- ◆ 법인 사업자의 경우 본점만 신청 가능하며,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 등은 참여 불가
- ◆ 사업계획서를 대필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신청자 및 작성자 등 관련자 전원에게 대해 사기 또는 업무 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서류평가에서 제외
- ◆ 사업계획서상의 모든 항목은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작성항목 중 미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평가결과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 공모전 신청자는 모집요강 및 붙임의 '사업화자금 사용기준'을 사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심사제외 대상

- ◆ 제출서류 양식 미 준수 및 필수서류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타 부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접수하는 경우
(예시 : 예비관광벤처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초기관광벤처에 접수하는 경우)
- ◆ 사업계획서 양식 임의변경 및 요약서 미 제출하는 경우
- ◆ **사업계획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최종 제출하는 경우**
- ◆ 공모전 신청 및 선정 단계별 요구되는 제출서류를 기한 내 미 제출하는 경우
- ◆ 동일·유사 아이템으로 관광벤처사업 공모전 타 부문(ex. 예비관광벤처, 성장관광벤처 등)에 중복하여 지원하거나, 명의를 도용하여 중복 지원하는 경우
- ◆ 공기업 및 준 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또는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
- ◆ 2차 발표평가 시 참가신청서 상의 대표자가 발표하지 않은 경우

□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 유의사항

- ◆ 본 공모전의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사업실행계획 등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한 경우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음
- ◆ 선정 이후 창업지원사업 중복참여 및 초기창업자 지원자격 등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 선정기업이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지원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함
- ◆ 초기관광벤처부문 선정된 간이과세자의 경우, 협약기간 중 일반과세자(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로 변경해야 함
- ◆ 초기관광벤처 부문으로 선정된 사내스타트업(사내벤처)이 개인사업자일 경우, 반드시 협약기간 중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협약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 선정된 기업은 협약종료 2개월 이내 창업아이템과 관련된 신규업종을 반드시 추가해야 함 (복수 사업자의 경우 공모전 참가 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을 추가)
- ◆ 정부지원금 유용 및 편취 등 사업계획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적발되었을 경우, 협약 취소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 될 수 있음

□ 기타 안내사항

-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광벤처사업 운영지침'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 공모전 운영사무국 문의 시 안내받은 의견은 단순 참고사항 이므로 모든 사업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본 공모요강을 충분히 숙지하고 최종 응모해야 함
- ◆ 본 공모전과 관련하여 운영사무국은 참가자(기업)의 최종 응모에 따른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
- ◆ 본 사업 선정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초기관광벤처 자격 부여

붙임 사업화 자금 사용기준

구분		집행기준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구입비 · 사업수행을 위한 최소수량 구매가능
외주용역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제품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에 의뢰하는 용역비 · 선금인정(최대 50%, 이행보증증권 혹은 지급각서 必)
유형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사용 가능한 기계, 설비, 비품 등을 구매하는 비용 · 협약종료 1개월 이전까지 납품 완료건에 한정 · 생활가전,통신기기,일반사무용품 구입 불가 · PC 및 노트북은 신규인력 채용 시 인당 1개 한정 · 건물, 토지, 부대시설 등과 관련하여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는 비용집행(시설비, 인테리어비 등)은 제한 받을 수 있음
무형자산취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재산권, 특허, SW등록 저작권 등 출원·등록 경비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채용 직원 인건비 및 신규직원 1명당 기존직원 1명 인건비 인정 (인당 월 250만원 한도) · 사업자부담 4대보험료 지원불가 · 대표자 및 친족 등 지급불가
지급수수료	기자재 임차비	· 기기, 장비, SW 라이선스 임차료 등, 협약기간 내 인정
	공간 임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보육료 형태 임차료 집행 불가 · 주택 및 근무좌석 지정되어 있지 않은 공유오피스 불가
	시장반응조사비	· 시장반응 확인 및 홍보를 위한 체험비,입장료,가이드비, 참가자 보상비 등 인정
	전시회참가비	· 등록비, 부스임차비, 참가비, 장치비 등 인정
	법인설립비	· 법인설립을 위한 법무 수수료
	회계감사비	· 공사 지정 회계법인에 대한 회계감사 비용
	세무기장료	· 세무 기장 수수료 지원
여비	해외여비	· 아이템 고도화,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해외 출장 시 집행 비용 (이코노미 기준 해외항공비 실비만 지급)
교육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의 임직원이 사업화를 위해 기술 및 경영 교육 이수 시 집행하는 비용 · 4대보험 가입인력 한정, 환급비 제외하고 지급
광고선전비	홍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앱), 영상물, 리플릿, 광고게재 등 비용 · 배포용 기프트콘 등 경품 집행불가
	팸투어비	· 언론홍보 및 유관기관 대상 홍보를 위한 팸투어 실 행사 소요비 지원

※ 세부 내용 및 기준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